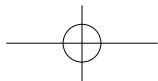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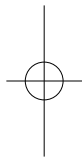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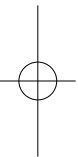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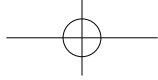




5

학칙 및 학사관련 규칙

학칙 | 학칙 시행세칙 | 학생 준칙
장학금 지급 규칙 | 생활관 운영 규칙
공학교육전문과정 운영 규칙



| **아주대학교 학칙** |

제정 2004. 10. 12	개정 2007. 07. 25
개정 2004. 12. 07	개정 2007. 09. 09
개정 2005. 01. 18	개정 2007. 10. 19
개정 2005. 02. 01	개정 2008. 02. 22
개정 2005. 04. 19	개정 2008. 05. 21
개정 2005. 06. 01	개정 2008. 07. 10
개정 2005. 06. 21	개정 2008. 12. 16
개정 2005. 07. 12	개정 2009. 02. 20
개정 2006. 01. 31	개정 2009. 04. 02
개정 2006. 03. 30	개정 2009. 04. 29
개정 2006. 05. 30	개정 2009. 07. 27
개정 2006. 06. 20	개정 2009. 10. 18
개정 2006. 07. 11	개정 2009. 12. 07
개정 2006. 08. 18	개정 2010. 02. 26
개정 2006. 10. 26	개정 2010. 07. 21
전면 개정 2006. 11. 10	개정 2010. 11. 01
개정 2006. 11. 30	개정 2011. 01. 11
개정 2007. 03. 26	개정 2011. 5. 19
개정 2007. 05. 14	개정 2011. 8. 11
개정 2007. 06. 22	개정 2011. 12.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의 이념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이념)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인간존중, 실사구시, 세계일가의 정신으로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연구하며 교육·연구의 능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사회에 직접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정의) ① “학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② “석사과정”이라 함은 석사학위를, “박사과정”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함은 학사에게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③ “대학원과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설치된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모두를 말한다.

④ “학과간협동과정”이라 함은 대학원과정 안에 2개

이상의 학과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⑤ “학연산협동과정”이라 함은 대학원과정 안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을 말한다.

⑥ “학·석사연계과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사과정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연계하는 과정을 말한다.(신설 2008.5.21)

⑦ “특수학부”라 함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학부를 말한다.(개정 2008.5.21) (개정 2010.7.21)

⑧ “전문과정”이라 함은 학사과정에서 대외 교육인증을 받기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신설 2011.8.11)

제2장 조직

제4조(기구) 본 대학교에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특수학부, 대학교본부, 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의료원, 총장직속기구 및 특별기구를 두며,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7.3.26) (개정 2007.7.25) (개정 2007.9.9) (개정

2008.2.22) (개정 2008.12.16) (개정 2009.2.20) (개정 2009.4.2) (개정 2009.4.29) (개정 2009.7.27) (개정 2009.10.18) (개정 2009.12.7) (개정 2010.2.26) (개정 2010.7.21) (개정 2011.1.11) (개정 2011.8.11) (개정 2011.12.23)

제5조(총장)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본 대학교를 대표한다.

제6조(부총장) ① 교무부총장은 의무(醫務) 이외의 교무(校務)에 관하여, 의무부총장은 의무(醫務)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각 부총장은 총장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9.4.2)

② 총장이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4.2)

제7조(대학교본부) ① 대학교본부에 교무처, 연구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대외협력처를 둔다.

② 각 처의 업무에 관하여는 「아주대학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의2(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 ①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제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기구로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를 둔다.(신설 2009.7.27)

②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는 평생교육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관할한다.(신설 2009.7.27)

③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 운영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7.27)

제8조(대학원)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대학원을 둔다.(개정 2008.12.16) (개정 2011.1.11)

1. 일반대학원
2. 전문대학원: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산업대학원, 경영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ITS대학원, 보건대학원, 법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② 일반대학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두며, 설치학과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06.11.30) (개정 2007.10.19) (개정 2008.5.21) (개정 2008.12.16) (개정 2009.4.2) (개정 2009.7.27) (개정 2009.12.7) (개정 2010.2.26) (개정 2010.7.21) (개정 2010.11.1) (개정 2011.8.11) (개정 2011.12.23)

③ 전문대학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둘 수 있으며, 설치학과는 별표3과 같다.(개정 2007.3.26) (개정 2008.12.16)

④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두며, 설치학과는 별표4와 같다.(개정 2008.5.21) (개정 2008.12.16) (개정 2009.7.27) (개정 2010.2.26) (개정 2010.11.1) (개정 2011.1.11) (개정 2011.8.11)

⑤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 학과간협동과정과 학연산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⑥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9조(대학 및 특수학부)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대학 및 특수학부를 둔다. (개정 2008.12.16) (개정 2010.7.21)

1. 대학: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기초교육대학
2. 특수학부: 국제학부

② 대학 및 특수학부에 설치된 학부 및 전공, 연계전공은 별표5와 같다.(개정 2007.5.14) (개정 2008.5.21) (개정 2008.12.16) (개정 2009.2.20) (개정 2009.4.2) (개정 2009.7.27) (개정 2009.10.18) (개정 2010.2.26) (개정 2010.7.21) (개정 2011.1.11)

③ 대학 및 특수학부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10조(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료원) 의료원에는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의과대학부속병원, 연구기관, 기획조정실 및 연구지원실을 별표1과 같이 두며, 세부사항은 「의료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7.5.14) (개정 2008.12.16) (개정 2011.5.19)

제3장 교무회의, 교수회 및 위원회

제12조(교무회의) ① 본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무회의를 둔다.

② 교무회의의 구성은 「아주대학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교무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교무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교수회) ①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7.25)

③ <삭제 2009.12.7>

- ④ 기타 교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7.25)
- ⑤ <삭제 2007.7.25>

제13조의2(직원회) ① 본 대학교에 직원회를 둔다.(신설 2007.7.25)

- ② 직원회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80조에서 정하는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7.7.25)
- ③ <삭제 2009.12.7>
- ④ 기타 직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7.7.25)

제14조(대학원위원회) ① 본 대학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② 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한다.
- ③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대학원위원회는 일반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4.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⑤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⑥ 대학원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장은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전문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전문대학원별로 학사운영위원회를 두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3.26)

제16조(특수대학원위원회 및 학사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교에 특수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② 특수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각 특수대학원장, 교무처장 및 기획처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7.25)
- ③ 특수대학원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특수대학원위원회는 특수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3. 규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⑤ 특수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⑥ 특수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특수대학원별로 학사운영위원회를 두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특수대학원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교에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1.12.23)

- ② 위원회는 교직원 4인, 학생 4인, 관련전문가 2인, 학부모 1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한다.(신설 2011.12.23)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1.12.23)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1.12.23)
 - 1. 교직원 위원 :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 2. 학생 위원 : 학부생 3인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일반대학원생 1인은 일반대학 원 원우회에서 추천한 자
 - 3. 관련 전문가 위원 : 대학 회계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로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자
 - 4. 학부모 위원 :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부모로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자
-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11.12.23)
- ⑥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1.12.23)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12.23)
- ⑧ 위원회는 해당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23)
- ⑨ 위원회는 등록금책정관련 심의결과를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23)

제17조의2(기타 위원회) 본 대학교의 연구, 교육 및 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교직원

제18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원은 교육을 담당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사회봉사에 힘쓴다.

② 직원은 행정을 담당한다.

③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19조(교원) ① 교원은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특임교원과 명예교수로 구분하고, 교육과 연구의 효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연간 15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2.26)(개정 2011.12.23)

제20조(직원 및 조교) ① 직원으로 일반직, 기술직 및 기능직을 두고, 필요시 한시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임시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직원 및 조교의 자격, 근무조건 및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는 「직원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5장 입학 및 퇴학

제21조(학생정원) ①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정하며 별표6 내지 별표8과 같다. 다만,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과정의 입학정원에 포함한다.(개정 2007.3.26)(개정 2007.5.14)(개정 2007.6.22)(개정 2007.10.19)(개정 2008.7.10)(개정 2008.12.16)(개정 2009.10.18)(개정 2009.12.7)(개정 2010.2.26)(개정 2010.11.1)(개정 2011.1.11)(개정 2011.8.11)(개정 2011.12.23)

②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3.26)(개정 2008.12.16)

③ 학사과정의 학생모집은 모집단위별로 하고, 모집단위 및 학생정원은 별표9와 같으며, 학부별로 모집한 학생의 전공 결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5.21)(개정 2008.12.16)(개정 2009.10.18)(개정 2010.2.26)(개정 2010.7.21)(개정 2011.8.11)

제22조(신입학) ① 대학원의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다만, 교사자격증 발급이 안되는 전공을 제외하고 교육대학원에 2000학년도부터 신·증설되는 전공은 현직교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08.12.16)

1. 국내의 대학교에서 정규의 대학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기타 법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간호학과의 전문간호사과정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69호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자

②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박사과정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다만,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3년 진입시부터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7.3.26)(개정 2008.12.16)

1. 국내의 대학교의 대학원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2. 기타법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전 2호의 자격을 갖춘 본 대학교 재직 전임교원으로서 재학기간에 휴직하는 조건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자

③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1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다만, 신청회수에 제한은 없으나, 해당학기 박사과정 입학정원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신설 2007.10.19)

④ 학과간협동과정 및 학연산협동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학연산협동과정은 해당 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산업체의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개정 2007.10.19)

⑤ 학사과정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개정 2007.10.19)(개정 2008.12.16)(개정 2011.1.11)

1.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기타 법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전 1호, 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삭제 2011.12.23>

⑥ 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12.16)

제23조(정원의 입학) ① 대학원과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12.16)

1.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3. 본 대학교와 학·군 제휴협약에 의한 군 위탁생으로 추천받은 자
- ② 학사과정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각 조건에 따라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12.16)
1.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5.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③ 계약학과와 학생정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8.11)

제23조의 2(계약학과)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8.11)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 등은 별표10과 같다. (신설 2011.8.11) ③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11)

제24조(편입학) ① 대학원과정은 국내의 대학원의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별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감한 여석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학사과정은 학생정원의 여석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전문대학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인정된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재외국

민 및 외국인인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3.26)

- ③ <삭제 2007.3.26>
- ④ <삭제 2007.3.26>
- ⑤ <삭제 2007.3.26>
- ⑥ 편입학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재입학) ① 대학원과정의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 및 동일학과에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12.7)

②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학생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자퇴 또는 제적의 사유 및 재적시의 성적, 품행 등을 참작하여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둔다.

1.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퇴학의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③ 재입학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입학시기) ① 대학원과정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일선 이내로 한다. 단, 학년도를 3학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 1학기, 3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일선 이내로 한다.(개정 2010.2.26)

② 학사과정의 입학시기는 1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일선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 편입학 및 순수 외국인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일선 이내로 한다.(개정 2008.12.16)

제27조(입학지원) ① 본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입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입학전형) ① 본 대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본 대학교의 입학허가는 총장이 행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학교가 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은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수업료는 수강 학점 수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필요한 경우 학적유지를 위해 소정의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총장은 필요한 경우 등록금 이외의 비용을 등록금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⑤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전과) ① 대학원과정에 입학한 자는 제2학기 및 제3학기 진급대상자에 한하여 해당학기 개시 전에 재학 중 1회만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학과폐지, 지도교수 소속변경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7)

② 학사과정에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의 이행, 기타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본인 혹은 다른 학생의 수화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대학원과정의 휴학기간은 1회에 1년, 통산 2년(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12.16)

④ 학사과정의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 통산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에도 학적을 보유한다.

⑥ 군복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특수대학원의 경우 당해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에서 규정하는 특수상황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신설 2009.10.18)

⑧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복학)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34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와 학부장의 확인을 받아 자퇴 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5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이유 없이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사과정의 경우 이중학적을 보유한 자
4.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자퇴한 자
6. 재학기간 중 3번째 학사경고에 해당되는 자(다만, 간호대학 학사학위특별과정의 경우는 2번째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통산 2회 유급 또는 연속 3회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1.5.19)
7.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8.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는 불미한 행동을 하는 자

제36조(재학연한) ① 대학원과정에는 재학연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은 7년, 석·박사통합과정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12.16) (개정 2011.5.19)

②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학부의 경우는 9년(18학기)을 초과하지 못하며,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후 본 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할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장 수업 및 학위취득

제37조(수업연한) ① 대학원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편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최소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3.26) (개정 2007.7.25) (개정 2008.5.21) (개정 2008.12.16)

1. 석사과정
 - 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년 이상
 - 나.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석사과정: 2년 이상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3년 이상
- 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4년 이상
- 다.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2년 이상
- 2. 박사과정: 2년 이상
- 3. 석·박사통합과정
 - 가.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4년 이상
 - 나. 전문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4년 이상
 - 의학전문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7년 이상
- 4. < 삭제 2007.7.25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8.12.16)
 - 1.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 2. 일반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생이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 3. 특수대학원 입학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 가.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
 - 나. 외부 기관의 위탁생으로서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③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사과정은 5년(10학기)으로, 의학사과정은 6년(12학기)으로 한다.

- 제38조(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2학기로나눈다. 다만, 학기 개시일을 전후하여 수업을 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2.16)
1. 제1학기: 3월 1일 개시
 2. 제2학기: 9월 1일 개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원에서 필요한 경우 학과단위로 학년도를 다음 각호와 같이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16)
1. 제1학기: 3월 1일 개시
 2. 제2학기: 6월 1일 개시
 3. 제3학기: 9월 1일 개시
- ③ 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수업일수 등)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11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2.16)

- ②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방학 중 수업과 주간수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 ③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제40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개교기념일
 4. 일요일
 5. 기타 국정 공휴일
- ② 휴업일 중일지라도 실험, 실습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41조(임시휴업) ① 비상사태,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② 임시휴업과 그 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 제42조(학사과정의 전공) ① 학사과정의 모든 학생은 당초 입학한 모집단위에서 제1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6) (개정 2011.1.11) (개정 2011.8.11)
- ② < 삭제 2011.12.23 >
- ③ 학사과정의 학생은 제3학년 진급 이전에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및 연계전공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전문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진급 이전에 전공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개정 2011.8.11)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외지원사업으로 정원관리가 필요한 학과(전공)는 사업에서 정하는 정원내에서 전공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 ⑤ 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43조(복수전공, 부전공 및 연계전공) ①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학생은 부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부전공과목의 학점은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9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②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특수대학원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1.11)
- ③ 학사과정의 학생은 다음 각호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의학부, 간호학부, 약학부, 정보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융합전공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학부는 복수전공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1.11) (개정 2011.12.23)

1. 복수전공: 2개 이상의 전공
2. 부전공
3. 연계전공: 2개 이상의 전공, 2개 이상의 학부 또는 학부와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제44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체육,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일반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전공과목과 연구과목으로 구성한다.

③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으로 구분하며, 전공교육과정은 전공별로 정하여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5.21)

④ 대학원 및 학사과정에서는 국내의 인증기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인증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5.21)

⑤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생은 학과장 및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⑥ 「고등교육법」 제29조에 의하여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5.21)

⑦ 대학원과정 및 학사과정은 교육과정을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⑧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⑨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학점인정) ① 대학원과정의 경우에는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수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8.12.16) (개정 2009.12.7)

1. 일반대학원: 학점교류에 의한 성적인정은 전공과목 학점의 2분의 1 이내.
2. 전문대학원: 전공과목 학점의 2분의 1 이내. 다만,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함.(개정 2007.3.26)
3. 특수대학원: 6학점 이내. 단, 학점교류 협약에 의한 경우에는 전공과목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협약 내용을 우선 적용.

② 학사과정 및 일반대학원의 경우에는 본 대학교와 협약관계에 있는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8.12.16)

③ 대학원과정 및 학사과정에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재입학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④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경우 신·편입학자의 학점은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석사는 12학점, 박사는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7.3.26) (개정 2009.12.7)

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된 학생의 경우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7.10.19)

⑥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편입학 자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 대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이는 해당학부 또는 전공에서 결정한다.(개정 2007.10.19)

⑦ 전과 및 학부를 변경한 자가 전적 학과 및 전적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7.10.19)

⑧ 제44조 제5항에 의한 학점인정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6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12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7.10.19)

⑨ 학사과정 학생은 총 12학점까지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중 6학점까지 학사과정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하고 나머지 학점은 해당 학생이 본 대학교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경우에는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07.10.19)

⑩ 학사과정 학생 중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이하“군 휴학자”라 한다)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총 12학점 이내(학기당 3학점 이내,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8.12.16)

⑪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0.19)

제46조(수강신청, 시험 및 성적) ① 학사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19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 누계평점평균이 3.75이상인 학생은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졸업이수학점 요건이 다른 학부 또는 학과(전공)는 학사운영규칙에서 따로 정하며, 학군후보생으로서 군사학 학점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이수할 군사학 학점 수만큼 초과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 (개정 2011.1.11) (개정 2011.12.23)

- ② 학사과정의 성적평가를 위하여 매학기 수강과목에 대하여 중간고사, 기말고사 및 그 외의 시험을 실시한다.
- ③ 일반대학원과정의 학생은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매학기 12학점(학년도를 3학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9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7.6.22) (개정 2008.12.16)
- ④ 대학원과정에서 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사항, 보고서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며 그 평어,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평어, 점수 및 평점은 학사운영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7.6.22) (개정 2011.5.19)

[교과목 학점]

평 어	점 수	평 점
A ⁺	95~100	4.5
A ⁰	90~94	4.0
B ⁺	85~89	3.5
B ⁰	80~84	3.0
C ⁺	75~79	2.5
C ⁰	70~74	2.0
F	0~69	0

[연구학점]

S(가)
U(부)

- ⑤ 대학원과정에서 동일 교과목(대체과목 포함)의 재수강은 F학점 과목에 한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학사운영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22) (개정 2011.5.19)
- ⑥ 학사과정의 성적은 과목별로 종합평가하며, 그 평어,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6.22)

평 어	점 수	평 점
A ⁺	95~100	4.5
A ⁰	90~94	4.0
B ⁺	85~89	3.5
B ⁰	80~84	3.0
C ⁺	75~79	2.5
C ⁰	70~74	2.0
D ⁺	65~69	1.5
D ⁰	60~64	1.0
F	0~69	0.0

- ⑦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P”(합격), “F”(불합격)로 평가하되, 성적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6.22)
- ⑧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성적 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취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개정 2007.6.22)
- ⑨ 수강신청,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6.22)

제47조(학사경고, 유급) ①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실시한다.

1. 당해학기 취득성적이 평점평균 1.75 미만인 자
2. 당해학기 취득성적 중 F가 6학점 이상인 자
3.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② 의과대학 의학부, 간호대학 간호학부, 약학대학 약학부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해당학년 최종성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한다.(개정 2008.12.16) (개정 2011.1.11)

1. 의과대학 의학부, 약학대학 약학부 및 의학전문대학원: 1, 2학기를 통산한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1.75 미만인 자 또는 해당과목 교과목 중 낙제 과목(F등급)이 있는 자(개정 2011.1.11)
2. 간호대학 간호학부: 학년 말 성적평균이 1.75 미만인 자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경고 및 유급한다.(신설 2008.12.16) (개정 2011.5.19)

1. 학사경고
 - 가. 당해학기 취득성적이 평점평균 2.0 이하인 자
 - 나. 당해학기 취득성적 중 F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 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2. 유급: 해당학년 말 최종성적 평점평균이 2.0 이하인 자

④ 학사경고 및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대학원과정의 수료 및 학위취득) ① 대학원과정의 수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개정 2008.12.16) (개정 2011.5.19)

1. 소정의 등록을 마친 자
2.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누계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단,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2.0 초과인 자, 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1.75 이상인 자

② 대학원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③ 대학원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각 학사운영규칙에서 정한 시험

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2.16)

④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위논문심사청구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8.12.16)

1.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에 한하여 연구과제 결과 심사 청구.(개정 2007.3.26)
2. 특수대학원: 제49조에 의한 학점이수.(개정 2007.3.26)
- ⑤ 대학원과정에서 학위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과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 대학원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2.16)

1. 일반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2.26)

과 정	전공과목	연구과목
석사 (전문간호사과정) (금융공학과)	24 (33) (39)	6 (6) (6)
박사	60	9
석·박사통합	54	9

이 경우 박사과정의 전공과목 이수학점에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 최대 24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단, 금융공학과와 의 경우 최대 39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2. 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 각목과 같다. 이 경우 박사과정의 전공과목 이수학점에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 최대 24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이론과목 15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7.3.26)

가. 정보통신전문대학원

과 정	전공과목	연구과목
석사	24	6
박사	60	9
석·박사통합	54	9

나. 의학전문대학원

과 정	전공과목	연구과목
석사	160	-
석·박사통합	194	9

다. 법학전문대학원

과 정	전공과목	연구과목
석사	90	-
석·박사통합	60	9

3. 특수대학원 : 특수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 각목과 같다.(개정 2007.3.26) (개정 2009.7.27)

가. 경영대학원

과 정	전공과목	연구과목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42	6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48	-

나. 국제대학원 :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학 3학점을 이수해야 함.

학 과	구 분	전공과목	연구과목
국제경영학 과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42	6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48	-
국제통상학 과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33	6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39	-
NGO학과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30	6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36	-
국제개발협력 학과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30	6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36	-
여타학과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27	6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33	-

다. 산업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ITS대학원, 보건대학원, 법무대학원

과 정	전공과목	연구과목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24	6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30	-

제50조(학사과정의 졸업요건) ①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1.11) (개정 2011.12.23)

1. 공과대학(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제외), 정보통신대학(정보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융합전공 제외): 128학점
 2.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60학점
 3. 정보통신대학 정보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융합전공: 140학점
 4.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120학점
 5. 의과대학: 240학점
 6. 간호대학: 128학점
 7. 약학대학: 172학점
- ② 학사과정의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및 간호대학의 경우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2학점(단, 정보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융합전공은 35학점)이상으로 하고, 의과대학은 40학점, 약학대학은 43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1.11) (개정 2011.12.23)
1. 제1학년: 30학점 이상
 2. 제2학년: 60학점 이상
 3. 제3학년: 90학점 이상
 4. 제4학년: 120학점 이상
- ③ 학사과정의 졸업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12.16)
1. 소정의 등록을 마친 자
 2.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누계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4. 공인어학능력시험에서 학교가 정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5. 각 학부(전공)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 ④ 기타 교과별 학점 등 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12.16)

제51조(학사과정의 조기졸업) ① 본 대학교의 학사과정에서 6학기 이상 등록한 자 중 당해학기 취득학점을 포함해서 졸업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누계 평점평균이 3.75 이상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의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단축하여 조기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한 자와 의학사학위과정, 간호학사학위과정, 약학사학위과정 및 건축학사학위과정은 제외한다.(개정 2011.1.11)

②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이상인 자가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학사과정의 졸업연기) 학사과정에서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졸업연기신청서를 제출하

여 졸업연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졸업연기자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졸업하려는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4.2)

- 제53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①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전공에 따라 별표2 내지 별표4에 의한 별지1 내지 별지7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다만,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기에 부전공을 표시한다.(개정 2008.2.22) (개정 2008.7.10) (개정 2008.12.16) (개정 2009.4.2) (개정 2009.7.27) (개정 2010.2.26) (개정 2010.7.21) (개정 2010.11.1) (개정 2011.1.11) (개정 2011.5.19)
- ②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중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7.3.26)
- ③ 일반대학원의 동일학과 내에서도 2개 종류 이상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④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의 발전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이룩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3조의2(일반대학원 복수학위수여) 일반대학원과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수학점, 자격시험, 논문심사 등 세부사항은 협정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한다.(신설 2008.12.16)

- 제54조(학사과정의 학위수여)** ①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전공에 따라 별표5에 의한 별지8의 학위기(중)를 수여한다.(개정 2008.12.16) (개정 2009.2.20) (개정 2009.4.2) (개정 2009.7.27) (개정 2009.10.18) (개정 2010.2.26) (개정 2010.7.21) (개정 2011.8.11)
- ② 복수전공, 부전공 및 연계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에 이를 표시한다.
- ③ 졸업 시기는 2월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졸업자 또는 1학기에 전 과정을 이수한 자의 졸업은 8월로 할 수 있다.

제55조(학위취소) 총장은 학위수여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시간제등록생 등의 운영

제56조(시간제등록생) ①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당해년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선발한다.(개정 2009.4.2) (개정 2010.7.21)

② 시간제등록생은 본 대학교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통합반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별도반으로 분리하여 선발하며, 선발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및 면접고사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한다.(신설 2009.4.2) (개정 2009.7.27)

③ 시간제등록생의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학점당 이수시간, 수업방법은 본 대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반의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9.4.2) (개정 2010.7.21)

④ 시간제등록생은 신청학점당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에 일반교양, 직무교양, 학술연구 또는 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연구과정) ①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과정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위탁교육) ① 본 대학교는 산업체, 공공기관 등 외부 기관의 위탁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탁교육생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학생활동

제60조(학생회 및 학생단체) ① 본 대학교에 학생자

치기구인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및 대학원 원우회를 둔다.(개정 2007.7.25)

② 총학생회는 학생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을 추천한다.(신설 2007.7.25)

③ 본 대학교의 학생은 학생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개정 2007.7.25)

④ 학생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 및 학생 자율적 경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7.25)

제61조(등록금협의회) <삭제 2011.12.23>

제62조(활동범위) ① 학생은 교육목적에 위배되거나 대학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학생의 학업, 학생생활 및 학생활동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사회봉사, 후생복지 및 상벌

제64조(사회봉사) ① 본 대학교는 인력과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 및 인류사회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② 사회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5조(장학금 등) ①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등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 및 재정보조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장학금 지급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66조(포상) 품행이 단정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포상할 수 있다.

1. 입학성적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자
3. 대외기관의 경시대회, 운동경기 등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

제67조(징계처분) ① 학생이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③ 상벌위원회의 구성 등 학생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학생상벌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의2(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학습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4.2)

제10장 재정

제68조(재원의 다양화) 본 대학교는 학생들이 납입하는 등록금 이외의 다양한 재원으로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제69조(재정의 건전성) ① 본 대학교는 건전한 재정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② 본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회계에 관한 자문은 대학 평의회에서 한다.(개정 2008.7.10)

제11장 기타

제70조(학칙개정) ① 본 학칙의 개정은 규정류조정위원회의 검토와 교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②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20일 동안 사전 공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일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1.8.11) (개정 2011.12.23)

제71조(학사운영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및 각 대학원의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73조(자체평가) ① 본 대학교는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다.(신설 2009.4.2)
②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4.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1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는 2004년 10월 12일 폐지된 학칙을 적용한다.
③ 이 학칙 개정 당시 스포츠마케팅학부 및 스포츠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21일 개정 이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단,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등 및 하위 학년에 재학하는 학생부터는 변경 학칙을 적용한다.
④ 200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일반대학원의 응용사회학과 정치외교학전공 학생의 경우에는 제53조 별표2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석사, 정치학박사를 수여한다.
⑤ 2006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보건대학원의 환경.산업보건학전공 학생의 경우에는 제53조 별표4에도 불구하고 '보건학석사(환경.산업보건)'를 수여한다.
⑥ 제32조 4항은 200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⑦ 제53조 별표4의 특수대학원 학위는 200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이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⑧ 제54조 제1항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전 입학자 중 공학교육인증이수자에 한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⑨ 이 학칙에서 '정보통신전문대학원학사운영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은 '정보통신전문대학원학사운영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현행의 '정보통신전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이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학칙은 2006년 11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3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일반대학원의 응용사회과학과 행정학전공 학생의 경우에는 제53조 별표2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를 수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 별표5의 학사과정 중 응용화학생명공학부의 경우는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08학년도 입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등 및 하위학년에 재학하는 학생부터는 변경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1.11)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에 따른 조치) ①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2017년 3월 1일자로 법과대학을 폐지한다.(신설 2008.12.16) (개정 2011.12.23)

② 2009학년도부터는 법과대학 법학부 법학사학위과정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며, 2009학년도 전에 입학한 법학부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이들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법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50조 제3항 제4호는 2009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하며, 편입학자의 경우에는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200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 별표5의 학사과정 중 응용화학생명공학전공의 공학교육인증제 중단에 따라 2009 ~ 2010학년도 입학생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2011학년도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1학년도 임상치의학대학원 입학생은 임상치의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2학년도 부터는 자유전공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며,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유전공 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이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1. 기구]

구 분	학 부	업무지원부서
대학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기초교육대학	
일반대학원	대학원	
전문대학원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산업대학원, 경영대학원, 국제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ITS대학원, 보건대학원, 법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부속기관	평생교육원, 대학교육혁신원, 어학교육원	교무처
	중앙도서관, 중앙전산원, 박물관, 공동기기센터	연구처
	생활관, 아주심리상담센터, 종합인력개발원, 보건진료소, 대학언론사	학생처
	법학전문도서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기관	공학연구소	공과대학
	정보통신연구소	정보통신대학
	기초과학연구소	자연과학대학
	경영연구소	경영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대학
	법학연구소	법학전문대학원
	약과학연구소	약학대학
	다산기초교육연구소	기초교육대학
	에너지기후변화연구소, 교통연구센터, 환경연구소, 정보전자기술연구소, 자동차부품혁신연구센터, 수원발전연구센터, 유비쿼터스컨버전스연구소, 나노·정보융합기술연구소, 교육연구소, 세계학연구소, 공공정책연구소, 장위국방연구소, 열대학연구소, 분자과학기술연구센터, 세포기능체연구소, TOD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연구센터, 건설시스템공학연구센터	연구처
의과학연구소, 뇌질환연구센터, 임상역학센터, 간 및 소화기질환 유전체 연구센터,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 신경과학기술연구소, 세포치료센터, 지역사회 안전증진 연구소, 세포사멸조절 신약개발센터, 지역임상시험센터, 신경재생줄기세포연구소, 유헤스정보 연구소,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간호과학연구소, 정신건강연구소, 보건정책연구소, 노인보건연구센터, 치매 및 두뇌건강연구소, 노인간호관리센터	의료원	
공과대학 소속	공학교육혁신센터	
기초교육대학 소속	교직부, 의사소통센터	
교육대학원 소속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중소기업법무센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지원센터	
교무처 소속	아주서비스센터	
학생처 소속	학생상담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입학처 소속	입학사정센터	
대외협력처 소속	불어권협력센터	
중앙도서관 소속	출판부	
대학교육혁신원 소속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평가인증센터, 융복합교육센터, 산학연교육센터, 비교과교육센터	

구 분	학 부		업무지원부서
지원기관	종합인력개발원 소속	사회진출센터, 사회봉사센터, 여성센터	
	대학언론사 소속	학보사,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	
	소속 없는 지원기관	학생군사교육단, 예비군연대, 과학영재교육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의료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의과대학부속병원, 의과학연구소, 뇌질환연구센터, 임상역학센터, 간 및 소화기질환 유전체 연구센터,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 신경과학기술연구소, 세포치료센터, 지역사회 안전증진 연구소, 세포사멸조절 신약개발센터, 지역임상시험센터, 신경재생줄기세포연구소, 유헬스 정보연구소,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간호과학연구소, 정신건강연구소, 보건정책연구소, 노인보건연구센터, 치매 및 두뇌건강연구소, 노인간호관리센터, 기획조정실, 연구지원실		
총장직속기구	대학발전본부, 홍보실, 비서실		
특별기구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성인학위과정운영센터, 창조인재교육센터, 평생교육연구개발센터, 성인학습 및 HRD컨설팅센터)		

[별표2. 일반대학원]

계 열	학과(부)	설치 학위과정 및 학위명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공학계열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산업공학과			
	화학공학과			
	재료공학과			
	환경공학과			
	건설교통공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시스템공학과			
도시개발학과				
정보통신학계열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미디어학과	미디어학석사	미디어학박사	미디어학석사 미디어학박사
	지식정보보안학과	공학석사	×	×
자연과학계열	수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이학석사 이학박사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경영학계열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계 열	학과(부)	설치 학위과정 및 학위명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경영학계열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석사	경영정보학박사	경영정보학석사 경영정보학박사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석사	글로벌경영학박사	글로벌경영학석사 글로벌경영학박사
인문학계열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문학석사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문학석사	×	×
사회과학계열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심리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문학석사 문학박사
	응용사회학과	사회학석사	사회학박사	사회학석사 사회학박사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석사	정치학박사	정치학석사 정치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법학계열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의학계열	의학과	의학석사 이학석사	의학박사 이학박사	의학석사 의학박사 이학석사 이학박사
	의생명과학과	의학석사 이학석사	의학박사 이학박사	의학석사 의학박사 이학석사 이학박사
간호학계열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간호학박사	×
약학계열	약학과	약학석사	약학박사	약학석사 약학박사
계열에 속하지 않는 학과(부)	에너지시스템학부	공학석사 이학석사 경제학석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경제학박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이학석사 이학박사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분자과학기술학과	공학석사 이학석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공학석사, 이학석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교육학과	×	교육학박사	×
	금융공학과	이학석사 금융공학석사	이학박사 금융공학박사	이학석사 이학박사 금융공학석사 금융공학박사

계 열	학과(부)	설치 학위과정 및 학위명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학과간협동과정	나노정보융합기술학과	공학석사 이학석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이학석사 이학박사
	의용공학과	의용공학석사	의용공학박사	의용공학석사 의용공학박사
	우주계측정보공학과	공학석사 이학석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이학석사 이학박사
	응용생명공학과			
	NCW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금융공학협동과정	공학석사 이학석사 경영학석사 경제학석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경영학박사 경제학박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이학석사 이학박사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학연산협동과정	고등기술연구원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	○	○
	한국원자력연구소	○	○	○
	대우건설기술연구소	○		
	오리온전기종합연구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
	전자부품연구원	○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
	삼성전기(주)	○		
	LG전자(주)	○		
	농촌진흥청	○	○	○
	나노소자특화팩센터	○	○	
	LIG빅스원(주)	○	○	○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	○	○
삼성탈레스(주)	○	○	○	

주) 1. “X”는 해당학과에 해당 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함.
 2. “○”은 학연산협동과정에 설치되어 있는 학위과정을 의미하며, 학과는 협약에 의하여 설치되므로 표기하지 않았음.

[별표3. 전문대학원]

계 열	학과(부)	설치 학위과정 및 학위명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석사(정보통신)	공학박사(정보통신)	공학석사(정보통신) 공학박사(정보통신)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의무석사	-	MD-PhD (의과학박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법학전문석사	법학박사	-

주) MD-PhD는 의무석사와 이학박사의 통합학위임.

[별표4. 특수대학원]

특수대학원	학 과	전 공	학 위 명
산업대학원	기계공학과	기계공학	공학석사(기계공학)
		재료공학	공학석사(재료공학)
	정보전자공학과	정보전자공학	공학석사(정보전자공학)
	화학생명공학과	공업화학	공학석사(공업화학)
		생물공학	공학석사(생물공학)
	환경공학과	환경공학	공학석사(환경공학)
	산업시스템공학과	산업공학	공학석사(산업공학)
		로지스틱스	공학석사(로지스틱스)
		품질시스템	공학석사(품질시스템)
		비즈니스정보공학	공학석사(비즈니스정보공학)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	공학석사(컴퓨터공학)
	건설교통공학과	건설공학	공학석사(건설공학)
		교통공학	공학석사(교통공학)
	비즈니스정보공학과	비즈니스정보공학	공학석사(비즈니스정보공학)
	도시개발학과	도시개발	공학석사(도시개발)
		도시건축	공학석사(도시건축)
지식재산공학과	지식재산공학	공학석사(지식재산공학)	
물류경영공학과	물류경영공학	공학석사(물류경영공학)	
에너지학과	에너지공학	공학석사(에너지공학)	
	에너지경제학	에너지경제학석사(에너지경제학)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	국제통상학석사(국제통상학)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영학	경영학석사(국제경영학)
	NGO 학과	NGO학	국제관계학석사(NGO학)
	한국학과	한국학	문학석사(한국학)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협력학	국제학석사(국제개발협력학)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금융	경영학석사(금융)
		회계학	경영학석사(회계학)
		경영전략	경영학석사(경영전략)

특수대학원	학 과	전 공	학 위 명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인사조직	경영학석사(인사조직)
		마케팅	경영학석사(마케팅)
		생산/운영관리	경영학석사(생산/운영관리)
		e-비즈니스	경영학석사(e-비즈니스)
		병원경영	경영학석사(병원경영)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	행정학석사(일반행정)
		사회복지	행정학석사(사회복지)
		전자정부	행정학석사(전자정부)
	정책학과	부동산	행정학석사(부동산)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
국어교육			교육학석사(국어교육)
영어교육			교육학석사(영어교육)
수학교육			교육학석사(수학교육)
공통과학교육			교육학석사(공통과학교육)
컴퓨터교육			교육학석사(컴퓨터교육)
상담심리			교육학석사(상담심리)
공통사회교육			교육학석사(공통사회교육)
역사교육			교육학석사(역사교육)
평생교육			교육학석사(평생교육)
대학행정관리			교육학석사(대학행정관리)
특수교육			교육학석사(특수교육)
유아교육			교육학석사(유아교육)
초등영어교육			교육학석사(초등영어교육)
e-learning			교육학석사(e-learning)
영재교육			교육학석사(영재교육)
TESOL			교육학석사(TESOL)
정보통신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정보처리/전자상거래	공학석사(정보처리/전자상거래)
		정보통신	공학석사(정보통신)
		정보보호	공학석사(정보보호)
		정보통신/C4I	공학석사(정보통신/C4I)
		정보보호/C4I	공학석사(정보보호/C4I)
		유비쿼터스시스템	공학석사(유비쿼터스시스템)
		유비쿼터스시스템/C4I	공학석사(유비쿼터스시스템/C4I)
		정보시스템감리	공학석사(정보시스템감리)
ITS대학원	ITS학과	ITS전공	공학석사(ITS)
	교통공학과	교통공학	공학석사(교통공학)
		교통안전	공학석사(교통안전)

특수대학원	학 과	전 공	학 위 명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과 관리	보건학석사(보건정책과 관리)
		역학과 건강증진	보건학석사(역학과 건강증진)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안전보건	보건학석사(안전보건)
		구강위생관리	보건학석사(구강위생관리)
법무대학원	법무학과	지식재산법무	법학석사(지식재산법무)
		금융조세법무	법학석사(금융조세법무)
		지방자치법무	법학석사(지방자치법무)
		경찰법무	법학석사(경찰법무)
임상치의학대학원	임상치의학과	급속교정학	치의학석사(급속교정학)
		임플란트·보철학	치의학석사(임플란트·보철학)
		치과마취학	치의학석사(치과마취학)
		구강악안면외과학	치의학석사(구강악안면외과학)

[별표5. 학사과정]

특수대학원	학 과	전 공	학 위 명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기계공학*	공학사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산업정보시스템공학*	공학사
	화공·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	공학사
		신소재공학*	공학사
	응용화학생명공학부	응용화학생명공학	공학사
	환경건설교통공학부	환경공학*	공학사
		건설시스템공학*	공학사
교통시스템공학*	공학사		
건축학부	건축학	건축학사	
	건축공학*	공학사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부	전자공학*	공학사
	정보컴퓨터공학부	정보컴퓨터공학*	공학사
		소프트웨어융합*	공학사
미디어학부	미디어학	미디어학사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수학	이학사
		물리학	이학사
		화학	이학사
		생명과학	이학사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	경영학사
	e-비즈니스학부	e-비즈니스학	경영학사
	금융공학부	금융공학	금융공학사
인문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문학사
		영어영문학	문학사

특수대학원	학 과	전 공	학 위 명
인문대학	인문학부	불어불문학	문학사
		사학	문학사
		문화콘텐츠학	문학사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경제학	경제학사
		행정학	행정학사
		심리학	심리학사
		사회학	사회학사
		정치외교학	정치학사
	스포츠레저학부	스포츠레저학	스포츠레저학사
법과대학	법학부	법학전공	법학사
의과대학	의학부	의학	의학사
간호대학	간호학부	간호학	간호학사
약학대학	약학부	약학	약학사
기초교육대학	-	-	-
(특수학부)	국제학부	국제통상	국제통상학사
		지역연구	지역학사
		기초의과학(연계전공)	이학사
		문화산업과 커뮤니케이션(연계전공)	문화학사

주) *는 공학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공으로서 이를 이수한 학생은 학위기 등에 'OO공학전문'으로 표기하고,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학위기 등에 '00공학'으로 표기한다.

[별표6.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과 정		학년도별 입학정원(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석사과정	학과	418	418	418	417	420	420	420	516	516	514*	514*	
	학과간협동과정	31	31	20	50	40	30	30					
	학연산협동과정	40	40	20	40	30	30	30					
	소 계	489	489	458	507	490	480	480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 정	학과	159	159	204	220	220	210	210	234	234	231*	231*	
	학과간협동과정	22	22	20	30	25	20	20					
	학연산협동과정	22	22	15	15	15	15	15					
	소 계	203	203	239	265	260	245	245					
총 계		692	692	697	772	750	725	725	750	750	745	745	

* 금융공학과의 석사과정 입학정원은 18명, 박사과정 입학정원은 2명임.

[별표9. 학사과정 입학정원]

대학	학 부		학년도별 입학정원(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145	145	136	136	136	144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88	88	81	81	81	86
	화학·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전공	88	88	82	82	82	47
		신소재공학전공						40
	생명·분자공학부		74	74	-	-	-	-
	응용화학생명공학부		-	-	69	69	69	73
공과대학	환경건설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116	116	109	109	109	38
		건설시스템공학전공						39
		교통시스템공학전공						38
	건축학부		78	78	73	73	73	77
	소 계		589	589	550	550	550	582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부		215	215	202	202	202	214
	정보컴퓨터공학부	정보컴퓨터공학전공	148	148	139	139	139	117
		소프트웨어융합전공	-	-	-	-	-	30
	미디어학부		97	97	91	91	91	96
	소 계		460	460	432	432	432	457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수학전공	169	169	156	156	156	44
		물리학전공						35
		화학전공						39
		생명과학전공						48
	소 계		169	169	156	156	156	166
경영대학	경영학부		144	144	133	113	113	113
	e-비즈니스학부		46	46	44	44	44	44
	금융공학부		-	-	-	40	40	40
	소 계		190	190	177	197	197	197
인문대학	인문학부		181	181	204	204	189	194
	소 계		181	181	204	204	189	194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222	222	240	240	225	233
	스포츠레저학부		6	6	11	11	11	11
	소 계		228	228	251	251	236	244
법과대학	법학부		120	120	-	-	-	-
	소 계		120	120	-	-	-	-
의과대학	의학부		20	20	20	20	20	20
	소 계		20	20	20	20	20	20
간호대학	간호학부(학사학위특별과정)		40(80)	40(80)	70(80)	70(80)	70(80)	70(80)
	소 계		40(80)	40(80)	70(80)	70(80)	70(80)	70(80)

대학	학 부	학년도별 입학정원(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약학대학	약학부	-	-	-	-	20	30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	-	-	100	80	90	-
(특수학부)	국제학부	-	-	-	-	-	-
	스포츠학부	-	-	-	-	-	-
총 계		1,997(80)	1,997(80)	1,960(80)	1,960(80)	1,960(80)	1,960(80)

주) “-”표기는 입학정원이 없음을 의미함.
 <삭 제 2011. . . >

[별표10. 계약학과 입학정원]

설치대학(원)	설치형태	학과 또는 전공	학위의 종류	입학정원(명)
경영대학원	재교육형	경영학과 경영전략전공	경영학석사	100

[별지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되어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 문 :

년 월 일

아주대학교 대학원장 ○ ○ ○ (인)

위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아주대 ○○○○ (석) 호

[별지2.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학위기]

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되어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 문 :

년 월 일

아주대학교 대학원장 ○ ○ ○ (인)

위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아주대 ○○○○ (박) 호

[별지3.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제출자)]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되어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 문 :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전문대학원장 ○ ○ ○ (인)

위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아주대 ○○○○ (석) 호

[별지4.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 비제출자)]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전문대학원장 ○ ○ ○ (인)

위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아주대 ○○○○ (석) 호

[별지5.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학위기]

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되어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 :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전문대학원장 ○ ○ ○ (인)

위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아주대 ○○○○ (박) 호

[별지6.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제출자)]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되어 ○○○석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 문 :

년 월 일

아 주 대 학 교 ○ ○ 대 학 원 장 ○ ○ ○ (인)

위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아주대 ○○○○ (석) 호

[별지7.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 비제출자)]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석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아 주 대 학 교 ○ ○ 대 학 원 장 ○ ○ ○ (인)

위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아주대 ○○○○ (석) 호

[별지8. 학사과정 학위기]

학 제 호

학 위 기(증)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와 같이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공(학사)

○○○전공(학사)

○○○부전공 이수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아주대 ○○○○ (학) 호

|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

제정 1998. 12. 1	개정 2009. 4. 10
전면개정 2006. 11. 10	개정 2009. 9. 3
개정 2007. 05. 14	개정 2009. 12. 17
개정 2008. 05. 21	개정 2010. 3. 25
개정 2008. 09. 24	개정 2010. 12. 16
개정 2008. 10. 10	개정 2010. 12. 30
개정 2008. 12. 8	개정 2011. 8. 10
개정 2009. 4. 2	개정 2011. 11.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학사과정 운영에 적용한다.

제2장 입학

제3조(입학지원) 본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 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정한 지원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입학전형)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입학시험을 행할 수 있으며, 입학시험의 종류와 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등록

제5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의 금액과 납부기간은 매학기 등록기간 전에 이를 공고한다.

③ 등록은 등록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본 대학교에 학적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8)

1. 교환학생으로서 외국의 자매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하는 자
2. 졸업예정자 중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기

- 다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3. 졸업예정자 중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교류학기의 성적이 미 이관된 자

제6조(등록연기) 학생이 매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강 일로부터 2개월까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금 일부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8.9.24) (개정 2008.10.10)

제7조(초과등록) 학칙 제37조 제2항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가 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9.24)

1.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40~6학점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7~9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10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

제8조(등록금의 정산) 전과 등으로 인하여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등록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 질병, 천재지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학 중인 경우 : 자퇴원서 제출일
2. 휴학 중인 경우 : 휴학원 제출일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입학자 중 자퇴자의 경우에는 입학일 당일까지는 입학금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08.5.21)

1.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전액 반환
 2.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6분의 5 반환
 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3분의 2 반환
 4.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2분의 1 반환
 5.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6. 학기개시일 30일, 60일 및 90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자퇴원서 접수까지, 공휴일인 경우 익일 자퇴원서 접수까지를 인정한다.
- ④ 등록금 반환액의 기준은 장학금과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학생이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제4장 수강신청

제10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신청 학점) ①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19학점 이하로 한다. 다만, 정보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융합전공은 21학점 이하로 하고,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각 대학 학사운영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0.12.16) (개정 2011.11.3)

- ② 누계평균평군이 3.75 이상인 자는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있다.
- ③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 이하로 한다.
- ④ 계절수업의 수강신청학점은 계절수업당 6학점 이하로 한다.
- ⑤ <삭제 2011.11.3>
- ⑥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이하 “군 휴학자”라 한다)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3학점 이하로 한다.(신설 2008.9.24)
- ⑦ 학군후보생으로서 군사학 학점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이수할 군사학 학점 수만큼 초과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9.4.2)

제12조(수강신청 정정) 수강신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학교가 정한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정정할 수 있다.

제13조(수강과목 포기) ① 수강신청한 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수업 일수 4분의 1선까

지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계절수업에 수강신청한 과목은 포기할 수 없다.

- ② 수강과목 포기로 수강신청 학점이 변경되어도 등록금은 정산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재수강) ① 이수한 과목을 다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허용한다.
- ②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A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4.10)
 - ③ 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대체과목으로 재수강을 하여야 한다.
 - ④ 이전의 성적은 재수강 과목의 성적취득을 조건으로 재수강학기 일정시점 이후에 삭제하고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을 인정하며 재수강한 과목에 “R”을 표시한다.(개정 2008.5.21)
 - ⑤ 재수강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⑥ 재수강 이전에 받은 성적에 대한 학사경고는 유효하다.

제5장 교육과정

제15조(교육과정 이수원칙) ① 학생은 원칙적으로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군입대로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을 한 학생이 복학한 경우에는 복학한 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인증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5.21)

- ② 학생은 필수로 지정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전공필수에서 전공선택으로 학수구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학수구분이 변경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전공필수 과목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변경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⑤ 전공필수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된 경우 폐지 이전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대체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학·석사연계과정) ① 학사과정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사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8.5.21)

- ② 학·석사연계과정생은 4학기 이상 6학기에 재학 중이며, 지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와 진학희망 대학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5.21)

제16조(현장실습수업) ① 학생은 본 대학교가 인정하는 국내의 산업체 또는 협약 기관에서 현장실습수업을 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입학 전 학점 이수) 신입학자는 입학 전 대학이 지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18조(선수과목 이수) 학생은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해당학부 또는 전공에서 요구하는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전공이수 및 졸업요건

제20조(제1전공 이수 및 졸업요건) ① 학생은 교양과목 18학점 이상, 전공과목 34학점 이상(전공심화과정 54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각 학부(전공)에서 정한 졸업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과정 이수 학점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08.5.21) (개정 2011.8.10)

② 전공심화과정이나 전문과정을 운영하는 학부(전공)의 학생은 전공심화과정이나 전문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부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5.21) (개정 2011.8.10)

③ 타 대학교와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복수학위자, 교직과정 이수자와 학·석사연계과정으로 본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이 확정된 자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08.5.21)

④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OO전공(심화과정이수)’로 표기한다.(개정 2008.5.21)

⑤ 학생은 제3학년 진급 이전에 전공을 정하여야 하며 재학 중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전문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진급 이전에 전공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5.21) (개정 2009.4.2) (개정 2011.8.10)

⑥ 전공에약제 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입학 당시의 전공을 변경할 수 없다.

⑦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과정을 운영하는 학부(전공)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의하여 공학교육전문과정을 운영하는 학부(전공)의 전공이수 및 졸업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학교육전문과정 운영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5.21) (개정 2008.12.8) (개정 2009.4.2) (개정 2009.12.17) (개정 2010.3.25) (개정 2010.12.30) (개정 2011.8.10) (개정 2011.11.3)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융합전공은 전문과정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3)

제20조의2(자유전공 입학자의 제1전공 이수) ‘자유전공’으로 입학한 자는 제3학년 진급 이전에 소속 학부 및 제1전공을 정하여야 하며, 소속 학부를 정한 이후의 전공 변경은 학부 내의 전공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학교육전문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공학교육전문과정 운영규칙」을 따른다.(신설 2009.9.3)

제21조(복수전공 이수)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이수하고자 하는 해당 전공 또는 학부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과 34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 및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부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부전공 이수로 인정한다.

제22조(연계전공 이수) ①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전공 또는 학부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과 36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6학점까지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9.4.2)

② 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과 21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3학점까지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09.4.2)

③ 연계전공은 제1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개정 2009.4.2)

제23조(부전공 이수)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전공 또는 학부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과 21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장 수업

제24조(수업시간) ① 교시당 수업시간은 50분 또는 75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과목 담당교수는 수업시작 전에 학생의 출석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출석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성

적 제출 시에 출석부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휴강) 과목 담당교수의 사정으로 지정된 시간에 수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강조치 허가를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출석) ① 학생은 과목별 학기당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② 결석 사유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사유의 경우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0.12.16)

호	인정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1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직계 존·비속:5일 이내 기타:3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2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	해당 일	징병검사통지서, 훈련통지서 등
3	생리 공결에 의한 경우	매월 1회 (매학기 5일 이내)	병원진단서 (생리통 명기)
4	질병, 사고로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매학기 10일 이내)	입원확인서 (종합병원)
5	교육실습 등으로 인한 경우	실습기간	확인서 (해당부서)
6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출석인정허가원과 증빙서류를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12.16)

제8장 성적평가

제27조(시험) ① 시험은 정기고사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및 수시 진도시험으로 구분하며, 과목에 따라 과제물 부여, 구술시험, 실험실습실시 등으로 시험을 대치할 수 있다. 다만, 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종합시험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 학사운영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0.12.16)

② 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시험의 방식 및 각 시험별 평가 비중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교수에게 추가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으며, 추가시험의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8조(성적평가) 성적은 매학기 과목별로 출·결 및

제29조(성적분포) ①과목별 성적분포의 표준화를 위하여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경우에는 각 대학 학사운영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29조(성적분포) ①과목별 성적분포의 표준화를 위하여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 과정생, 체육특기자 및 학점교류생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상대평가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비율에 따른 인원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올림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8.5.21) (개정 2009.4.10)

1. 기본적용

등급	상대평가비율
A ⁺ 및 A ⁰	0 ~ 30%
B ⁺ 및 B ⁰	0 ~ 70% (A, B누적비율임)
C ⁺ 이하	30% 이상

2.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과목, 영어강의과목, 실험·실습과목, 수강생들의 공동연구 및 공동결과물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교과목

등급	상대평가비율
A ⁺ 및 A ⁰	0 ~ 40%
B ⁺ 및 B ⁰	0 ~ 90% (A, B누적비율임)
C ⁺ 이하	10% 이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전공과목, 교직 과목, 군사학 교과목 및 담당교수가 평가 주체가 되지 않는 현장실습 교과목 및 운영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교과목 등은 동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5.21)

④ 동일한 교과목을 2인 이상의 교수가 분반하여 강의, 동일 시험, 동일 채점으로 공동 관리하는 과목은 제2항의 분포비율을 과목별로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성적게시 및 확인) 과목 담당교수는 교무처에 성적을 제출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성적을 일정기간 게시하여야 하며, 학생은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여 성적의 누락, 착오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과목 담당교수에게 즉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성적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을 F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한 경우 (다만,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수업일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2. 시험 부정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32조(성적정정) 과목 담당교수가 교무처에 제출한 성적은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산정의 착오 등을 이유로 성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정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제33조(학점포기) 2000학년도 1학기부터 취득하는 학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을 제외하고는 학점포기를 할 수 없다.

1.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2. 졸업예정자가 학부(전공)의 사정으로 재수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하여 해당 학부장의 요청으로 총장이 승인을 한 경우
3.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1999학년도까지 취득한 학점 중 D+이하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제34조(특별시험 등에 의한 수강면제) ① 특별시험 등으로 수강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쳐 수강면제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8.5.21)

② 수강면제 대상과목 및 평가기준은 학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수강면제는 해당과목이 개설되는 권장학년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부·연계전공의 경우에는 학생의 이수전공확정시기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5.21)

④ 수강면제를 받은 과목의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산입하고 성적은 “면제”로 표기하며 누계평점계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⑤ 수강면제를 받은 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면제 받은 학점수 만큼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제35조(석사학위과정 수강특례 교과목의 성적) ①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수강교과목명 다음에 ‘대학원’이라고 표기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을 할 때에 해당 교과목을 석사학위과정 졸업이수학점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은 총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이 중 6학점까지 석사학위과정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하고 6학점까지는 해당 학생이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정보통신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석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07.5.14)

④ 석사학위과정 졸업이수학점에 포함시킨 교과목의 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의 전공 선택 과목 학점으로 한

다. 다만, 이수하는 전공에서 인정하지 않는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교양 선택 과목 학점으로 한다.

제9장 학사경고, 유급

제36조(학사경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에 처한다. 다만, 졸업사정에서 졸업이 확정된 자와 초과등록자 중 3학점 이하 성적취득자는 학사경고에 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16)

1. 당해학기 취득성적이 평점평균 1.75 미만인 자
2. 당해학기 취득성적중 F가 6학점 이상인 자
3.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②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게는 성적 발송 시 성적표에 이를 통보한다.

제37조(학사경고 제적) 재학 기간 중 3번째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다만, 간호대학 학사학위특별과정은 2번째 학사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적한다.

제38조(유급)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유급한 자의 성적 중 유급학년에 취득한 C+ 이하의 성적은 무효로 하며,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 학사운영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2.16)

제10장 계절수업

제39조(시기) 계절수업은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할 수 있다.

제40조(수업시간) 계절수업의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41조(대상)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생
2. 휴학생 중 계절수업이 개설된 직후 학기에 복학이 가능한 자

제42조(개설 취소) 수강신청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과목은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제43조(수강료 납부 및 반환) ① 계절수업 수강료는 소정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절수업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08.9.24)

1. 계절수업 개시 전: 전액
2.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 전: 수강료의 3분의 2
3.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경과한 날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전: 수강료의 2분의 1
4.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제44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계절수업당 6학점 이내로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45조(수강신청 정정) 수강신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교가 정한 기간에 정정할 수 있다.

제46조(성적처리) ① 계절수업 성적은 “계절수업”으로 별도 표시한다.

- ② 휴학생이 계절수업에 취득한 성적은 복학한 학기의 성적을 취득할 때까지 성적처리를 유보한다.
- ③ 계절수업에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 ④ 계절수업에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는 학사경고에 처하지 아니한다.

제11장 휴학 및 복학

제47조(휴학사유) 휴학은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허용한다.

제48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휴학: 군입대 이외의 휴학
2. 군입대 휴학: 군에 입대하기 위한 휴학

제49조(휴학원 제출 시기)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시기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휴학: 휴학하고자 하는 직전 학기 수업종료일부터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선까지. 다만, 미등록 휴학인 경우에는 4분의 1 선까지.
 2. 군입대 휴학: 군입영일이 속한 학기에 군입영통지서를 받는 즉시. 다만, 군입영일이 수업 종료일(기말고사 종료일) 이후일 때에는 수업 종료일 이후.
- ② 휴학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전에 휴학원을 제출한 자: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개시일.
 2.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중에 휴학원을 제출한 자: 휴학원 제출일.

제50조(휴학절차) ①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입대 휴학원에 군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일반휴학 중에 군에 입대하여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입대 휴학원에 군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후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을 제외하고는 일반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종합병원의 진단 결과 계속 4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중병으로 인한 휴학
2. 군입대 휴학

제51조(군입대 휴학자의 성적평가)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이상 출석하고 기말시험 이전에 군입대 휴학하는 자가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 제출 전까지 과목 담당교수의 성적을 평가받은 군입대 휴학자 성적 조기평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휴학기간 및 휴학연장) ① 휴학기간은 1회에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이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편(재)입학생은 편(재)입학 이후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못한다(군복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 학칙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휴학은 휴학기간에서 제외).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총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③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부터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휴학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경우에는 각 대학 학사운영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53조(휴학취소) ① 등록기간 중에 휴학절차를 마친 자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에 입대하고자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군입대 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휴학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4조(복학) ① 휴학자의 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학기 수업종료일부터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개시일 전까지 복학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학기 개시일 이후에 군제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업 일수 4분의 1선까지 복학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 ② 군제대 후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군복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군입대 휴학자는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명시한 복학 시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한다.

제55조(복학시의 등록금 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휴학 당시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시의 등록금 전액으로 인정한다.

- 1.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일반 휴학한 경우
- 2. 수업일수 3/4선 이내에 군입대 휴학한 경우
- 3.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업일수 3/4선 이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 휴학한 경우

제12장 전과

제56조(정의) 전과라 함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에서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을 변경함을 말한다.(개정 2011.11.3)

제57조(전과대상 및 시기) ① 전과대상자는 제2학년 1, 2학기 및 제3학년 1학기 진급대상자에 한하며, 학생은 재학 중 1회만 전과가 가능하다.

- ② 전과는 해당학기 개시 전에 허가하며,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기간에 전과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과신청자의 이수학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2학년 1학기 전과신청자 : 2학기 이수
 - 2. 2학년 2학기 전과신청자 : 3학기 이수
 - 3. 3학년 1학기 전과신청자 : 4학기 이수

제58조(요건) ① 전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11.3.)

- 1.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1개 학기 평균 1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누계평점평균이 2.50 이상이어야 한다.
- 2. 의과대학, 간호대학 및 약학대학으로의 전과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 학사운영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1. 전공예약제 전형으로 입학한 자
 - 2.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제59조(공과대학 개편에 따른 전과) 2003학년도 이전 입학한 기계 및 산업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환경·도시공학부 소속 학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자유로이 전과할 수 있다.

- 1. 기계 및 산업공학부로 입학한 자가 기계공학부,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화공·신소재공학부내에서 전과하는 경우
- 2. 화학·생물공학부로 입학한 자가 화공·신소재공학부, 생명·분자공학부내에서 전과하는 경우
- 3. 환경·도시공학부로 입학한 자가 환경건설교통공학부, 건축학부내에서 전과하는 경우

제60조(절차) 전과를 원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의 전과원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부(전공) 및 전입할 학부(전공)의 학부장(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9.3) (개정 2011.11.3)

제61조(수업연한) 전과한 자의 수업연한은 전과 이전에 이수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13장 재입학

제62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퇴 또는 제적의 사유, 재적시의 성적, 품행 및 재입학 후 수학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재입학사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 ②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④ 재입학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 처리를 하지 않아 제적된 자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9.3)

제63조(재입학자의 학사관리) ① 재입학자가 이전에 이수한 취득학점 및 성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 ② 재입학자의 학사경고 제적은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전의 학사경고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③ 재입학자가 전과자격을 갖춘 경우 전과를 허용한다.
- ④ 재입학자의 교육과정 적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3)

제14장 편입학

제64조(학점인정) 편입학자에게는 학부 또는 전공의 결정에 따라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일부를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대학교에서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 시 필요한 학점은 본 대학교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5조(교육과정 이수) ① 편입학자는 편입학한 후 동일 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입학자는 학부 또는 전공에서 권장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특별히 지정하는 교과목이 있을 경우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64조의 학점인정에도 불구하고 2학년 편입학자는 해당 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4분의 3을, 3학년 편입학자는 총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6조(등록학기 인정) ① 학칙 제37조 제2항의 수업연한은 편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② 전적대학 이수학기는 2학년 편입학자의 경우에는 2학기, 3학년 편입학자의 경우에는 4학기까지 인정한다.

제67조(학적부 관리) ① 학적부에는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 기록 관리하며, 졸업 시 평균평점은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성적만으로 산정한다.

② 학적부에 전적대학 성적에 관한 기재 내용은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00학점”으로 기록한다.

제15장 학점교류

제68조(학점교류) ① 국내 타 대학교와의 학점교류는 본 대학교와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교에 한하며, 학생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한다.

② 국외 타 대학교와의 학점교류는 「외국대학 유학생 및 교환학생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학점교류형태) 학점교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학 중 계절수업 및 특별개설 강좌의 학점교류
2. 학기 중 일부 특정과목의 학점교류
3. 학기 중 전체 과목의 학점교류

제70조(지원 자격, 신청 및 선발) ① 학점교류대상자는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

② 학점교류는 소정의 신청기간에 소속 학부장 및 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다.

③ 학점교류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선발한다.

1. 주소지가 지방(서울, 수도권 제외)으로서 주소지 소재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체·건강상의 장애로 본 대학교 수강이 곤란하여 부득이 타 대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3. 7-8학기를 이수한 자가 본 대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타 대학교에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제71조(학점교류기간) 학점교류는 재학 중 통산 2학기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그 수학기間は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에 포함된다. 다만, 계절수업 및 방학기간을 이용한 학점교류, 어학연수의 경우는 별도로 한다.

제72조(의무) ① 학점교류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본 대학교가 정한 소정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점교류기간 중에는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점교류기간 중 본 대학교의 승인 없이 자의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다.

④ 본 대학교 및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본 대학교 학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73조(타대학교 학점인정) ① 학점교류기간 종료 후 소정 기일 내에 학점인정신청서(당해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첨부)를 소속 학부장에게 제출하여 전공주임 교수, 학부장 및 교무처장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학 중 타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취득학점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근거로 심사하여 인정하되, 1개 학기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계절수업 및 방학기간을 이용한 학점교류, 어학연수의 경우에는 6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2항에 의한 인정과목은 본 대학교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하되 누계 평균평점에는 합산하지 않으며 취득 성적 그대로 학업성적표에 기록하고 이를 학점교류로 취득한 성적임을 표기한다. 다만, 복수학위자의 경우에는 본 대학교의 성적평가기준으로 환산하여 학업성적표에 기록한다.(개정 2007.5.14)

제74조(협약서 적용) 학점교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학점교류 협약서를 적용한다.

제16장 교직과정

제75조(교직과정 이수자)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해당 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할 자로서 졸업 후 중등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6조(설치전공)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전공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5.21)(개정 2011.11.6)

제77조(이수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1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전공 주임교수와 학부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8조(이수기간) 교직과정은 제2학년 1학기부터 최종 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9조(이수학점 및 과목) ① 교직과정에서 이수할 학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교직과목의 과목별 학점 배정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8.5.21)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 이상) 포함)
2. 보건교사(2급) 및 전문상담교사(2급):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②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별표4의 표시과목별 기본이수영역과목을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5.21)
- ③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과정 이수자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수영역 이외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80조(교직 복수전공 이수) ① 교직 복수전공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에 한하며, 제1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이어야 한다.

② 교직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 복수전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직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79조에 해당하는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1조(이수인정)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 평균성적이 75점 이상이어야 그 이수를 인정한다.(개정 2008.5.21)

제82조(교육실습) 교직과정 이수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실습을 받은 학생에 한해서 교원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5.21)

1. 학교현장실습
2. 교육봉사활동

제83조(교직과정 운영) 교직과정 운영 및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 대학교 지원금 및 교육실습생이 부담하는 실습비로 충당한다.

제84조(교원자격무시험검정)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졸업하는 학기말 일정 기간 내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별표 4와 같이 교원자격증을 발급한다.

제 17 장 보 칙

제85조(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학사운영)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12.16)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등록에 관한 규칙
2.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에 관한 규칙
3. 수업 및 출석에 관한 규칙
4. 학사경고에 관한 규칙
5.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규칙
6. 휴학 및 복학에 관한 규칙
7. 전과 규칙
8.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규칙
9.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칙
10. 교직과정 이수 규칙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등록,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 수업 및 출석, 학사경고, 계절학기 운영, 휴학 및 복학, 전과, 교직과정 이수,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4조 및 제5조 ①, ②, ④항은 1999학년도 2학기 등록부터 적용한다.

③ 제5조 ④항에 불구하고 1999학년도 1학기 현재 휴

학중인 학생중 1999학년도 2학기 이후에 휴학 당시의 등록금을 인정받아 복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정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1조는 1996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199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할 교육과정 운영 원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26조는 1999학년도에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⑥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취득성적의 포기)를 종전 규칙대로 적용한다.

⑦ 1999학년도 1학기 등록까지는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초과등록)를 종전 규칙대로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99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등록금의 반환은 제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6조(이수학점 및 과목)의 ②항은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1조(교육과정 이수원칙) 제6항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8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7조 제2호, 제52조, 제60조 제2항은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전 입학생이 최초 1학년으로 복학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제33조는 2005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3. 제51조, 제52조는 2006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의 수업료 및 입학금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7조, 제29조, 제52조 제1항은 200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 제1항, 제5항 및 제58조 제1항 1호의 전과요건은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최초 1학년으로 복학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③ 제14조 제2항은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④ 제15조는 1996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할 교육과정 운영 원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20조 제2항의 전공심화과정은 2004학년도, 공학교육인증과정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3학년도 이전의 전공심화과정은 학부 또는 전공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이전 입학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전공심화과정 및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⑥ 제20조 제6항 및 제58조 제2항 1호의 전공예약제 전형으로 입학한 자에 대한 전공변경 및 전과제한규정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⑦ 제37조는 1999학년도에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

함)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간호대학 학사학위특별과정은 2005학년도에 입학한 자부터 적용한다.
⑧ 제58조 제2항 2호의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에 대한 전과제한규정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⑨ 제64조는 2006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⑩ 제79조 제2항은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3조 4항은 2008학년도 학점교류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7년 3월 23일 이후 발생한 등록금의 반환은 제9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
② 제79조 제1항 및 제2항, 제81조, 제82조는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는 200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는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7항과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은 200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4조 제2항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6조는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개정 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별표 1]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과정 운영학부(전공)

대 학	학 부	전 공	운영학년도(입학년도)	
			전공심화과정	전문과정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기계공학	2004	2005부터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산업정보시스템공학		
	항공·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응용화학생명공학부	응용화학생명공학	2011부터	2009~2010
	생명분자공학부*	생명공학*	2004	2005부터
		응용화학*		
	환경건설교통공학부	건설시스템공학	2003~2004 2003부터	2005부터
교통시스템공학				
환경공학				
건축학부	건축공학	2003~2004	-	
	건축학(5년제)	2003부터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	2008부터	-
	e-비즈니스학부	e-비즈니스학	2010부터	-
	금융공학부	금융공학	2010부터	-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부	전자공학	2002~2004	2005부터
	정보컴퓨터공학부	정보컴퓨터공학	2002~2004	
		소프트웨어융합	-	2012부터
미디어학부	미디어학	2002부터	-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2004부터	-
		물리학		
화학				
인문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2004부터	-
		영어영문학		
		불어불문학		
		사학		
		문화콘텐츠학	2010부터	-

1) 공과대학 및 정보통신대학 전공 중 공학교육전문과정을 운영하는 전공은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지 않음.
 2) * 표기의 학부·전공은 응용화학생명공학부의 변경전 입학모집단위로서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만 적용함.

[별표 2]

교직과정 설치 승인 전공

대 학	전 공	비 고
공과대학	기계공학전공, 산업정보시스템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2007학년도 신입생까지 적용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인문대학	영어영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	
사회과학대학	심리학전공	2010학년도 신입생까지 적용
간호대학	간호학전공	

※ 공과대학 및 경영대학은 2008학년도, 사회과학대학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교직과정을 폐지함

[별표 3]

교직과목 교육과정표

영 역	과 목 별	학점	2학년		3학년		4학년		비 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직이론 영역	교육학개론	2	2학점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2학점					
	교육과정	2	2학점						
	교육평가	2	2학점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2학점				
	교육심리	2		2학점					
	교육사회	2				2학점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2학점			
교직소양 영역	특수아동의 이해	2		2학점					
	교 직 실 무	2			2학점				
교육실습 영역	학교현장실습	2					2학점 (4주)		
	교육봉사활동	2				2학점			
		24	6	6	4	6	2		

※ 교직과목은 총 2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교직이론 영역 14학점, 교직소양 영역 4학점, 교육실습 영역 4학점

[별표 2]

교직과정 설치 승인 전공

전 공	표시과목	자격종별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기계공학전공	기계.금속	중등학교 정교사(2급)	공업교육론, 고체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내연기관, 기계 설계, CAD/CAM, 기계공작법, 정밀공작법, 용접공학, 배관공학, 박용기관, 일반조선공학, 자동차공학, 유압공학, 전기공학, 전자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설계, 정밀공학, 센서 및 신호처리, 전자기계, 금속재료, 금속조직학, 화학야금학, 금속강도학, 철강재료학, 금속제련학, 주조공학, 부식방식학
산업정보시스템공학전공	정보.컴퓨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컴퓨터교육론, 컴퓨터프로그래밍, 데이터구조, 데이터베이스, 파일처리론,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컴퓨터시스템,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또는 알고리즘분석), 프로그래밍언어구조론, 인터넷입문
환경공학전공	자원.환경	중등학교 정교사(2급)	공업교육론, 환경교육론, 물리탐사, 광상학, 암석학, 광물학, 지사학, 구조지질학, 채광학, 자원공학, 광물처리, 자원개발, 환경공학, 수질분석실험, 생활폐기물처리, 환경공학설계, 환경설비, 환경오염측정, 해양학개론, 해양오염론
경영학전공	상업정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업정보교육론, 회계원리, 회계이론, 경영학원론, 무역영어, 무역실무, 전자계산개론(또는 프로그래밍), 전자계산실무(또는 컴퓨터그래픽), 경영정보론(또는 비서학개론), 상업경제, 마케팅관리론, 재무관리
영어영문학전공	영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교육론(또는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또는 영어문법지도법), 영어회화(또는 실용영어, 또는 영어말하기지도법), 영어작문(또는 영어쓰기지도법), 영어독해(또는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음성음운론, 영미문화
불어불문학전공	프랑스어	중등학교 정교사(2급)	프랑스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프랑스어학개론,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회화, 프랑스어강독,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단편산책
심리학전공	-	전문상담교사(2급)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치료,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직업교육론, 직업정보, 진로지도
간호학전공	-	보건교사(2급)	보건교육론,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상담이론과실제, 기초건강과학, 건강사정 및 실습, 학교보건 및 실습, 아동간호학 및 실습, 성인간호학 및 실습, 정신간호학 및 실습, 지역사회간호학 및 실습, 응급간호학 및 실습

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학생이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심신을 연마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아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8장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0)

제 2 장 복장과 규율

제2조(복장) 학생은 단정한 복장과 용모로써 예의바른 생활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제3조(학생증 발급) 등록을 마친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4조(학생증 휴대) ① 학생은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 대학교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5조 (2001. 7. 10 삭제)

제6조 <삭제 2007.12.10>

제7조(부당한 집단행위 등의 금지) 학생은 교내에서 집단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 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교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개정 2007.12.10)

제8조 <삭제 2007.12.10>

제 3 장 포상과 징계

제9조(포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7.12.10)

1.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2. 선행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3. 학교발전과 학생활동에 크게 기여한 학생
4.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학생

제10조(징계)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하여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사유가 경미할 경우에는 학적부에 기재되지 않는 경고, 사회봉사 등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07.12.10)

1. 근신(3일 이상 7일 이하)
 - 가. <삭제 2007.12.10>
 - 나. 수업을 방해한 경우
 - 다. 공중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
 - 라. 언행이 불량한 경우
 - 마. 그 밖에 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
2. 유기정학(8일 이상 3개월 이하)
 - 가. 폭행을 하여 타인을 상해한 경우
 - 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교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 다. <삭제 2007.12.10>
 - 라.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마. 도서관 자료를 훼손하거나 적법한 대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 바. 신고 없이 집회공고문, 집회계시문을 부착하거나 정당하게 게시된 집회공고문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 사. 신고 없이 집회공고문이나 집회유인물을 배포한 경우
 - 아. 신고 없이 집회를 한 경우
 - 자. 2회 이상 근신 처분을 받은 경우
 - 차. 그 밖에 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

- 제정 1983. 1. 25.
- 개정 1986. 1. 28.
- 개정 1997. 9. 12.
- 개정 1999. 11. 16.
- 개정 2001. 7. 10.
- 개정 2007. 12. 10.

- 3. 무기징학
 - 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 나. <삭제 2007.12.10>
 - 다. 제7조를 위반한 경우
 - 라. 금품 등을 갈취한 경우
 - 마. 학교 비품 또는 시설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 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사. 그 밖에 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
 - 4. 퇴 학
 - 가.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 행위를 한 경우
 - 나. 불미스런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 다. <삭제 2007.12.10>
 - 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경우
 - 마. 그 밖에 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
5. <삭제 2007.12.10>

제11조(포상과 징계의 결정) 학생에 대한 포상과 징계는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한 후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12.10)

- 1. 포상의 경우
 - 가. 공적조서
 - 나. 지도교수 의견서
 - 다. 학장의 추천서
- 2. 징계의 경우
 - 가. 사고 경위서
 - 나. 본인의 진술서
 - 다. 지도교수 의견서

제11조의2(변론기회의 보장) 징계의 경우에는 징계대상 학생에게 변론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신설 2007.12.10)

제 4 장 상담 및 지도

- 제12조(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① 학생의 학업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 2007.12.10)
- ② 지도교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개정 2007.12.10)
- ③ 학생단체(학생회, 동아리, 소학회 등) 활동의 지도 및 상담을 위하여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단, 지도위원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07.12.10)
- ④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은 집단 지도 및 개별 면담을 통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제13조(지도 및 상담) ①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의 지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7.12.10)

- 1. 학생자치기구 및 단체의 사업 계획
- 2. 각종 집회 및 행사
- 3. 학업 및 신상에 관하여 상담을 요하는 사항
- 4.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항

② <삭제 2007.12.10>

제 5 장 학생단체

제14조(학생단체) 학생단체라 함은 총학생회 및 각 원우회 산하에 있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7.12.10)

제15조(등록요건) 학생단체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7.12.10)

- 1. 학칙 및 본 규칙에 부합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 2. 학생단체의 설립취지와 이념에 찬동하는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질 것
- 3.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의 취임 승낙을 받을 것. 다만,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이 없는 경우 주무부서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등록절차) 등록은 신규등록과 재등록으로 구분하며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 학년 초 학교가 정한 기일 내에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의 확인(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 1. 신규 등록
 - 가. 학생단체 등록 허가원(소정양식)
 - 나.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 취임승낙서
 - 다. 회 칙
 - 라. 활동계획서 및 예산안(소정양식)
 - 마. 발기인 명단 및 예산안(소정양식)
- 2. 재등록
 - 가. 학생단체 재등록 허가원(소정양식)
 - 나. 회원명단
 - 다. 전학년도 활동 실적
 - 라. 신학년도 활동 계획서
 - 마.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 확인서

제17조(승인) 단체의 등록은 제16조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등록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7.12.10)

1. 학칙 및 본 규칙에 위배될 경우
2. 교내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2007.12.10>
4. 전학년도 활동실적이 없거나 극히 부진할 경우
5. 기타 학생활동으로 적합치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단체의 등록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는 활동을 하는 경우
7. <삭제 2007.12.10>
8. 등록기간 내에 단체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9조(등록승인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제16조에 의하여 올바른 등록절차를 거친 경우 학생처장은 제18조의 규정을 근거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일정기간 내에 신청단체에게 등록 승인 또는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제19조의2(등록취소통지에 대한 이의 신청) ① 등록이 취소된 학생단체는 등록취소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학생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7.12.10)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학생처장은 총학생회장 또는 원우회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후 등록신청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0)

제 6 장 집회, 게시물 및 간행물

제20조(집회 신고) 교내에서 학생의 집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제21조(집회 및 활동의 구분) 학생의 집회 및 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7.12.10)

1. 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자치활동
2. 정치활동
3. 학술연구 활동
4. 예·체능 및 취미 활동
5. 종교 활동
6. 각종 봉사 활동
7. <삭제 2001. 7. 10. >
8. <삭제 2001. 7. 10. >
9. 기타 정서 함양을 위한 교양 및 친목의 활동

제22조(집회신고서의 제출절차) ① 집회신고서는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의 확인을 받아 개최 72시간 전까지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② <삭제 2007.12.10>

③ 집회신고서에는 개최일시, 장소, 목적, 참석대상, 활동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집회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장소 사용 여부 및 추후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학생처장은 관련 부서장의 동의를 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제23조(연합행사) 본 대학교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대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이하 “연합행사”라 한다)를 본 대학교 안에서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연합행사 개최 2주전에 집회신고서에 종합행사계획서와 참가 대학교의 총·학장 또는 학생처장이 발급한 참가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제24조(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 ①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학생처장은 신고된 교내 행사가 범죄목적 또는 불법행위나 학교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행사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② 제1항에 의한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지받은 자는 학생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7.12.10)

③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학생처장은 재심을 하여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0)

제25조(게시물) ① 학생이 단체 또는 개인의 명의로 각종 공고문 등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시간 종료 즉시 해당 게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단, 게시기간 미명시, 상업성·음란·욕설·인신공격·혐오 내용, 지정된 장소가 아닌 경우, 과도한 수량 게시물 등은 즉시 제거할 수 있다.(개정 2007.12.10)

② 집회 공고문은 집회신고를 한 후에 게시하여야 하며, 입간판과 현수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12.10)

③ <삭제 2007.12.10>

제26조(용지의 규격) 게시용 공고문의 용지규격은 백색 4절지를 원칙으로 하며 그 매수는 학생처장이 제

한할 수 있다.

- 제27조(간행물) ① 학생의 각종 간행물은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의 확인을 거쳐 학생처장에게 신고한다.(개정 2007.12.10)
- ② <삭제 2007.12.10>

제 7 장 운동경기 참가

- 제28조(경기참가) ①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로 교내의 공식적 운동경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장 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 ② 수업 및 시험기간 중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학생처장은 참가자 명단을 교무처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9조(단체응원) 학생이 교외 운동경기에 단체로 응원 또는 참관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12.10)

제 8 장 보 건

제30조(건강진단)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질병으로 인한 휴학) 학생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중환자 및 전염병 감염자로 판단되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휴학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 이 규칙 종전에 시행하던 학생준수 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장학금 지급규칙 |

제정 1983. 1. 25
 전면개정 2008. 7. 26
 개정 2008. 10. 10
 개정 2011. 07. 06
 개정 2011. 12.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의 목적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65조에서 규정한 장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법령이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학사과정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학비감면 포함)은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장학금의 구분 등)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 총액과 지급인원 및 금액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4조(설치와 구성) ① 본 대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각 대학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및 입학처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 운영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장학 기본계획
 2. 장학금 종류 및 지급 세부방침
 3. 장학금 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장학생 선발 대상 및 기준

제7조(선발대상)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장학생으로 선발되려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행실이 바른 학생
3. 가정사정상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
4. 본 대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임직원 직계자녀 및 산하 대학 교직원 직계자녀
5. 교내 각 부서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학생
6. 학술, 체육, 사회봉사, 학생자치활동 등의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7. 국제화역량 및 취업역량 강화 등의 목적으로 자기개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학생
8. 기타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제8조(교내장학생 선발기준) ① 장학생은 직전학기에 F학점 없이 13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학생(교환학생의 경우에는 9학점 이상 취득하고 F학점이 없는 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개정 2008.10.10)

1. 제7조 제1호에 따라 입학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서 다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
 - 가. 3학년 1학기 이전 : 직전학기 성적 평점 3.50 이상
 - 나. 3학년 2학기 이후 : 직전학기 성적 평점 3.80 이상
2. 제7조 제2호의 경우에는 소속 학부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3. 제7조 제3호의 경우에는 가계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이나 소속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4. 제7조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학생처장, 소속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②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교외장학생 추천 및 선발기준) ① 각 장학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외장학생 추천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1. 각 장학단체에서 수혜대상 학생의 소속 및 전공 등을 지정하여 추천 의뢰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한다.
2. 각 장학단체에서 수혜대상 학생을 지명하여 추천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추천한다.
3. 각 장학단체에서 수혜대상 학생 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처장이 학부 또는 전공에 의뢰하거나 직접 추천한다.

② 교외장학생 추천 대상은 직전학기에 F학점 없이 13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학생(교환학생의 경우에는 9학점 이상 취득하고 F학점이 없는 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외장학기관이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선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학기 중에는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

1. 복학생 (단, 학업 성적우수장학에 한함)
2. 휴학 및 제적학생
3. 징계 처벌이 해제된 학생
4. 기타 위원회에서 선발자격을 제한한 학생

제11조(대여장학금) ① 대여장학금은 당해 학기에 교내·외에서 지급하는 다른 장학금을 수혜 받지 않은 학생으로서 가정형편상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대여장학금 수혜횟수는 재학기간 중 1회로 제한한다.

③ 대여장학금은 직전학기에 F학점 없이 13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④ 대여장학 예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⑤ 각 학부에서 추천한 대여장학금 수혜 대상학생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일까지 학생처에 대여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교비대여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교비대여 장학금 수혜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각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⑥ 대여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은 졸업 후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대여 받은 전

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장학금은 무이자로 대여한다.

1. 일시상환 : 대여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2. 분할상환 :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전액을 상환한다.

⑦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혜학생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한다. 다만, 수혜를 받은 학생이 제적,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여액을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장 장학금 지급 및 장학관리

제12조(신청기간) 장학금 신청은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제13조(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등록금을 고지할 때 장학금액 만큼 감면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선발된 학기의 등록을 마친 경우나 장학금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생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급제한) ① 장학금은 1인에게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성장학, 자기개발장학, 가계곤란장학, 학장추천장학, 국가고시반장학 및 리더(봉사)장학은 제외) (개정 2011.07.06) (개정 2011.12.28)

② 장학금 지급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성장학 및 가계곤란장학은 제외)(개정 2011.07.06) (개정 2011.12.28)

③ 위원회의 의결이나 교외장학기관의 방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1.07.06) (개정 2011.12.28)

제15조(계속장학생 관리) ① 입학전형에서 다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2. 입학전형에서 입학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제8조의 선발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학생
3. 입학전형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전과 또는 특기생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학생
4. 입학성적 우수 장학생의 경우,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군 입대 또는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이외의 사유로 휴학한 학생과 2학년(4개 학기) 수료 이전에 일반 휴학한 학생. 단, 군 입대를 전제로 일반 휴학한 학생이 동일학기 내에 군 입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외

② 입학전형에서 다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이 제8조의 선발기준에 미달하여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다음 학기 성적이 선발기준을 상회하면 1회에 한하여 장학생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외국인 특별장학생은 자격회복의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장학생의 자격상실) 선발된 교내장학생이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장학금의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단, 추가 선정 및 가계곤란장학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제17조(장학생의 교체)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장학생을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추천의뢰를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이전에 시행된 제14조의 장학금 지급 제한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칙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이전에 시행된 제14조의 장학금 지급 제한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칙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서식 1]

교비대여장학금 지급 신청서

일금 : (₩ . .)

위 금액을 년 학기 등록금 납부를 위하여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호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 생 본 인

대학 학부 학년
성명 : (인)

보호자(채무자)

현주소 : 전 화 :

성 명 : (인)

학생과의 관계 :

[서식 1]

교비대여 장학금 수혜 추천서

대 학 :
학 부 : 전 공 :
학 년 : 학 번 :
성 명 :

위 학생을 년 학기 교비 재원에 의한 대여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지도교수 : (인)

대 학 장 : (인)

[서식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아주대학교(신용정보제공자) 귀하

본인이 수혜한 교비대여의 상환과 관련하여 귀교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정기간 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때, 귀교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인)

아주대학교(신용정보제공자) 총장 귀하

생활관운영규칙

제정 2004. 12. 7.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생활관 운영규칙(이하 “이 규칙”이라 한다)은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주대학교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 칭) 생활관 건물의 명칭은 원천학사(남제관, 용지관, 화홍관, 광고관)라 한다.

제 3 조(개관기간) 생활관 개관기간은 아주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으로 하되, 생활관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제 4 조(특별개관) ① 생활관 개관기간이 아닌 기간에 생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생활관 운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생활관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생 이외의 단체로서 생활관의 시설물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관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5 조(사생활동) ① 질서 있고 명량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한 사생의 활동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② 사생의 자치적인 사내활동을 위하여 사생자치회를 둔다.

③ 사생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회칙은 생활관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6 조(사생수칙) 생활관장은 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생수칙을 따로 정한다.

제2장 조직

제 7 조(생활관장) 생활관에는 생활관장을 두며, 생활관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생을 지도하며,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전반을 관장한다.

제 8 조(운영팀) ① 생활관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생활관운영팀을 둔다.

② 운영팀에는 생활관 관리운영에 따른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할 약간명의 직원과 사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③ 운영팀의 업무분장은 업무분장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 9 조(설 치)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0 조(구 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각 단과대학별 전임교원 1인 이상과 생활관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생활관운영팀 직원 중에서 맡는다.

제 11조(기 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사생부담금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12 조(회 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 13 조(입사자격)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본 대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라야 한다.

제 14 조 (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생활관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자
3. 전염성 질환 환자 및 보균자
4. 휴학중인 자
5.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
6.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15 조 (입사생 선발) ① 생활관에 입사 하고자 하는 자는 입사신청 기간 중에 해당 인터넷에 접속 신청 한다. 단, 1인실 및 특별개관 등으로 인한 입사자는 예외로 한다.

- ② 입사지원자가 사생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사생 선발기준에 의한다.
- ③ 입사생 선발기준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 16 조 (입사등록) 사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지정된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를 구비하여 지정 장소 및 지정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지정기일 내에 등록을 안 한 경우에는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7 조 (퇴 사) 사생은 해당학기 중에는 퇴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8 조 (퇴사처분)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생활관장은 퇴사처분 한다.

1. 사생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한 자.
2. 제1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3.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19 조 (퇴사신고) 사생을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동물품을 반납하게 한 후 퇴사시킨다.

제5장 재 정

제 20 조 (경비부담) 생활관의 기본시설 등 학교당국의 보조로 충당된 경비를 제외한 생활관 관리비 및 사내 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제 21 조 (납부금) ① 사생이 납부하여야 할 입사비, 관리비 및 기타 경비는 따로 정한다.

- ② 납부한 입사비 등은 퇴사를 이유로 원칙적으로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생활관장이 그 기준을 정하여 환불 할 수 있다.

제 22 조 (납부금의 납기) ① 입사비는 학기별 및 방학기간 별로 징수한다.

- ② 납부기일은 생활관장이 정한다.

제 23 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 24 조 (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편성 및 집행은 책임운영부서 운영규칙에 의한다.

제6장 사생회

제 25 조 (사생회) ① 생활관에는 전체 사생을 대표하는 사생회를 둘 수 있다.

- ② 사생회에서 건의하는 의견은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 26 조(회칙 및 임원) 사생회 회칙 및 임원의 자격기준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 27 조(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공학교육전문과정운영규칙

제정 2006. 11. 10
 전면개정 2008. 06. 19
 개정 2008. 12. 19
 개정 2009. 02. 20
 개정 2009. 5. 22
 개정 2010. 3. 25
 개정 2010. 12. 30
 개정 2011. 8. 10
 개정 2011. 10. 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20조 내지 제23조의 전공과 졸업요건에 따라 공학교육전문과정(이하 “전문과정”이라 한다)의 이수와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과대학과 정보통신대학의 각 학부(전공)는 2005학년도부터 전문과정을 운영한다. 다만, 응용화학생명공학부, 건축학부의 건축학전공과 미디어학부는 제외한다.(개정 2011.10.12)

제3조(교과목 구분) 전문과정을 운영하는 학부(전공)의 교과목은 전문교양 교과목, 수학·기초과학·전산학(MSC)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 등으로 구분한다.

제4조(교과목 이수단위) 강의와 공학설계의 학점 수는 한 학기에 15시간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정하고, 실험·실습 교과목은 한 학기에 30시간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5조(전공지정시기) 전문과정을 운영하는 학부(전공)의 학생은 제2학년 진급 이전에 전공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이수원칙) 학생은 원칙적으로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적변동 이후에 전문과정에 진입한 학생은 제7조의 졸업요건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졸업요건) ① 2009년 2월까지 졸업할 전문과정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문교양 교과목 18학점 이상, 수학·기초과학·전산학 교과목 27학점 이상(전산학 교과목은 6학

- 점 이내), 전공 교과목 62학점 이상 각각 이수
2. 공학설계 16학점 이상 이수(전공 교과목에서 종합설계를 포함)

②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졸업할 전문과정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2)

1. 전문교양 교과목 18학점 이상, 수학·기초과학·전산학 교과목 30학점 이상(전산학 교과목은 6학점 이내), 전공 교과목 60학점 이상 각각 이수. 다만,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정보컴퓨터공학 전공으로 졸업하는 전문과정의 학생은 전산학 교과목을 제외한 수학·기초과학 교과목으로 30학점 이상 이수
2. 공학설계 18학점 이상 이수(전공 교과목에서 기초설계와 종합설계를 포함)

③ 2012년 8월 이후에 졸업하는 전문과정의 학생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8월 이후에 졸업하는 정보컴퓨터공학 전공과정 학생은 전문교양을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구분	전문과정	정보컴퓨터공학 전문과정	소프트웨어융합 전문과정
전공	54학점 이상 (*공학설계 12학점 점이상 이수)	55학점 이상 (*공학설계 11학 점이상 이수)	60학점 이상 (*공학설계 12학 점이상 이수)
수학,기초과학,전산학	30학점 이상 (전산학 6학점 이 내)	-	-
수학,기초과학	-	22학점이상	24학점이상
전문교양	18학점이상	14학점이상	24학점이상

* 는 기초설계와 종합설계를 포함.

** 는 종합설계를 포함.

④ 전문과정 이수 학생은 제2항 내지 제3항의 해당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해당 전문과정에서 운영기준으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2)

1. 전문과정 학습성과별 성취도 달성을 위한 최소 요건
2. <삭제 2009.02.20>
3. 졸업요건에 대한 기사사항

제8조(전입생 수용) ① 전입생의 범위는 학사편입학생, 일반편입학생, 전문과정 시행이전에 입학한 복학생, 전과생, 재입학생과 복수전공 이수학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② 전입생이 전문과정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전문과정을 4학기 이상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전입당시 취득한 누계평점평균이 2.0이상이어야 한다.

③ 전입생이 학기가 어긋난 상태로 전입을 원할 경우에는 전문과정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전입생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은 해당 전공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과정 이수 학생과 동등한 학습성과가 만족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1.10.12)

⑤ 전입생 수용에 관한 기타 사항은 각 전공별 전문과정 운영기준 및 전문과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11.10.12)

제9조(전문과정 이수 등) ① 2005학년도 이후에 전문과정을 운영하는 학부(전공)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전문과정 이수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전문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전문과정의 운영기준에 따라 소정의 이수포기서를 제4학년 진입 시 제출하여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0.12)

③ 전문과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이나 연계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전문과정이 설치된 전공의 학생은 제1전공으로 전문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타 대학교와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복수학위자, 교직과정 이수자와 학·석사연계과정으로 본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이 확정된 자는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⑥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를 포함한 전입생은 전문과정 이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전입 시 소정의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이수 신청 및 포기에 관한 기타 사항은 각 전

공에서 정한 전문과정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10.12)

제10조(전문과정 복수전공 이수) 전문과정으로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전공에“전문과정 복수전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과정의 표기) 전문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전공에 따라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에 전공명과 함께 ‘전문’을 표기한다.(개정 2011.10.12)

제12조(상담과 관찰) ① 전문과정에 있는 학생은 교육과정 이수, 수강, 진로, 신상 등에 관하여 지도교수와 정기적으로 상담하여야 한다.

② 전문과정에 참여하는 교수는 전문과정에 있는 학생의 학업과 다양한 학생활동에 대한 관찰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교과목자료집) ① 전문과정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교과목의 교과목 자료집(Course Portfolio)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 교과목을 2인 이상이 강의할 경우, 각각의 담당교수는 자신의 강의 부분에 대한 교과목 자료집을 작성하여야 한다.

당 주임교수가 정하되, 수업계획서와 지속적 강의 품질 개선 보고서(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Report : CQI Report)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문과정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과목 자료집을 전공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과목 자료집은 4년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8.10)

④ 교과목포트폴리오 개선을 위한 CQI위원회는 매학기 말에 개최한다. (신설 2011.8.10)

제14조(전문과정별 운영기준) ①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전문과정별 운영기준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1.10.12)

② 전문과정별 운영기준을 개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개정 2011.10.12)

③ 제·개정된 운영기준은 본 대학교 요람 또는 학사안내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2)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정 이전에 공학교육인증과 관련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개정 당시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에 의한 [별표 1] 인증과정과 일반과정별 학위명칭 중 응용화학생명공학 전공의 경우는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08학년도 입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등 및 하위학년에 재학하는 학생부터는 변경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과정 운영전공의 학위명칭

전공명	전문 프로그램		일반 프로그램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기계공학	공학사 기계공학전문	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공학사 기계공학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산업정보시스템공학	공학사 산업정보시스템공학전문	Bachelor of Science in Industrial Engineering	공학사 산업정보시스템공학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화학공학	공학사 화학공학전문	Bachelor of Science in Chemical Engineering	공학사 화학공학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신소재공학	공학사 신소재공학전문	Bachelor of Science i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공학사 신소재공학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환경공학	공학사 환경공학전문	Bachelor of Science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공학사 환경공학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건설시스템공학	공학사 건설시스템공학전문	Bachelor of Science in Civil System Engineering	공학사 건설시스템공학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교통시스템공학	공학사 교통시스템공학전문	Bachelor of Science in Transportation System Engineering	공학사 교통시스템공학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건축공학	공학사 건축공학전문	Bachelor of Scien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공학사 건축공학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전자공학	공학사 전자공학전문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ical Engineering	공학사 전자공학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정보컴퓨터공학	공학사 정보컴퓨터공학전문	Bachelor of Science in Information and Computer Engineering	공학사 정보컴퓨터공학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소프트웨어융합	공학사 소프트웨어융합전문	Bachelor of Science in Software Convergence Technology		